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김선교·윤상현·박충권

이종배 · 김상훈 · 구자근

서지영 · 김성원 · 김위상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, 의료지원·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「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·양육 여부,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5·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,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음.

이에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

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 등).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"을 "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
- 2. 제94조의2에 따라 예우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
 - 가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
 - 나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
 - 다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

워

- 라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
- 마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 집된 사람

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4조의2(예우의 제한) 국가보훈부장관은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5·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쳐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,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예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

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~ ④ (생 략)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 우,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우에는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 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것으로 본다. 1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 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 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<u>경</u>우 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 2. 제94조의2에 따라 예우의 전 2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부가 제한된 경우 소집된 상근예비역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. 「병<u>역법」 제25조에 따라</u>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 무 중인 경우 가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소방원 4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 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 <u>니하고 임용된</u> 부사관을 소집된 사람 <u>5.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7</u> 포함한다)

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

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 의 경우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 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등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 한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 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l	ᆉ.		ΓH	병역	법		저	22	23	- 어		따
		<u>라</u>	소	:집	된	상	근	예	ㅂ]	역		
Ţ	<u>구.</u>		ΓH	병역	법		저	125	5 <i>조</i>	- 어]	따
		라		전혹	한토	부무	·된		의	무	경	찰
		<u>및</u>	٥	무	소	방	<u>원</u>					
Ĭ	라.		٦ ا	영역	법.		제:	23	こス	1	항	제
		<u>10</u>	호(케	叫	른	사.	회	복	무	요	원
		<u> </u>	로	소	집.	된	사	람				
<u></u>	가.		Γij	9역	법		제:	23	と ス	1	항	제
		<u>17</u>	호.	의2	에	u	}른	•	대	체	복	무
		요	원.	Ò Ē	른 ;	소 ⁷	집돈]	사	람		
6	_											
<u>></u>	<u> </u>	5항	.]	각	호	의	o-	느	-	하	나	에
해도	궁	하는	<u>-</u>	경-	우아	l 는						

제94조의2(예우의 제한) 국가보훈 부장관은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5·18민주 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

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 을 거쳐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, 정도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